

위치	오류유형	수정 전	수정 후
문제편 113~113p 번호 : 18	문제-문항	<p>18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감독에 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p> <p>① 청원주는 항상 소속 청원경찰의 근무 상황을 감독하고, 근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p> <p>② 관할 경찰서장은 청원경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원주를 지도하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p> <p>③ 관할 경찰서장은 매달 1회 이상 청원경찰을 배치한 경비구역에 대하여 복무규율과 근무 상황, 무기의 관리 및 취급 사항을 감독하여야 한다.</p> <p>④ 2명 이상의 청원경찰을 배치한 사업장의 청원주는 청원경찰의 지휘·감독을 위하여 청원경찰 중에서 유능한 사람을 선정하여 감독자로 지정하여야 한다.</p>	<p>18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감독에 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p> <p>① 청원주는 항상 소속 청원경찰의 근무 상황을 감독하고, 근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p> <p>② 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원주를 지도하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p> <p>③ 관할 경찰서장은 매달 1회 이상 청원경찰을 배치한 경비구역에 대하여 복무규율과 근무 상황, 무기의 관리 및 취급 사항을 감독하여야 한다.</p> <p>④ 2명 이상의 청원경찰을 배치한 사업장의 청원주는 청원경찰의 지휘·감독을 위하여 청원경찰 중에서 유능한 사람을 선정하여 감독자로 지정하여야 한다.</p>
문제편 135~135p 번호 : 13	문제-본문	<p>13 다음 중 경비업법상 경비원 교육기관의 <u>지정 취소 사유에</u> 해당하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원 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p> <p>ㄴ.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p> <p>ㄷ. 교육지침을 위반하여 경찰청장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p> <p>ㄹ. 경비원 교육기관의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p> </div> <p>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p>	<p>13 다음 중 경비업법상 경비원 교육기관의 <u>임의적 지정 취소·업무 정지 사유에</u> 해당하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원 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p> <p>ㄴ.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p> <p>ㄷ. 교육지침을 위반하여 경찰청장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p> <p>ㄹ. 경비원 교육기관의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p> </div> <p>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p>
문제편 136~136p 번호 : 17	문제-문항	<p>17 경비업법상 특수경비원의 당연 퇴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p> <p>① 특수경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당연 퇴직된다.</p> <p>② 특수경비원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조건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당연 퇴직된다.</p> <p>③ 특수경비원이 60세가 되어 퇴직하는 경우 60세가 된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7월 1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다음 해 1월 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p> <p>④ 특수경비원이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인 경우에는 당연 퇴직된다.</p>	<p>17 경비업법상 특수경비원의 당연 퇴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p> <p>① 특수경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당연 퇴직된다.</p> <p>② 특수경비원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조건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당연 퇴직된다.</p> <p>③ 특수경비원이 60세가 되어 퇴직하는 경우 60세가 된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7월 1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다음 해 1월 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p> <p>④ 특수경비원이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인 경우에는 당연 퇴직된다.</p>

위치	오류유형	수정 전	수정 후
정답 및 해설편 183~183p 번호 : 13	해설	<p>13 정답 ①</p> <p><u>제시된 내용은 모두 경비원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ㄱ은 필요적 지정 취소 사유이고 ㄴ, ㄷ, ㄹ은 임의적 지정 취소·업무 정지 사유이다.</u></p> <p><u>ㄱ.(○) 경비업법 제13조의3 제1항 제1호</u></p> <p>ㄴ.(○) 경비업법 제13조의3 제1항 제2호</p> <p>ㄷ.(○) 경비업법 제13조의3 제1항 제3호</p> <p>ㄹ.(○) 경비업법 제13조의3 제1항 제4호</p>	<p>13 정답 ①</p> <p><u>제시된 내용 중 ㄱ은 필요적 지정 취소 사유이고 ㄴ, ㄷ, ㄹ은 임의적 지정 취소·업무 정지 사유이다.</u></p> <p><u>ㄱ.(X) 경비원 교육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원 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는 필요적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하므로 경찰청장은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경비업법 제13조의3 제1항 제1호).</u></p> <p>ㄴ.(○) 경비업법 제13조의3 제1항 제2호</p> <p>ㄷ.(○) 경비업법 제13조의3 제1항 제3호</p> <p>ㄹ.(○) 경비업법 제13조의3 제1항 제4호</p>
정답 및 해설편 186~186p 번호 : 17	해설	<p>17 정답 ③</p> <p>③ (X) 60세가 된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경비업법 제10조의2 단서 전단).</p> <p>① (○) 경비업법 제10조의2 <u>본문</u>, 동법 제10조 제2항 제4호</p> <p>② (○) 경비업법 제10조의2 본문, 동법 제10조 제2항 제5호</p> <p>④ (○) 경비업법 제10조의2 본문, 동법 제10조 제2항 제2호·동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2호</p>	<p>17 정답 ③</p> <p>③ (X) 60세가 된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경비업법 제10조의2 단서 전단).</p> <p>① (○) 경비업법 제10조의2 <u>단서 후단</u>, 동법 제10조 제2항 제4호</p> <p>② (○) 경비업법 제10조의2 본문, 동법 제10조 제2항 제5호</p> <p>④ (○) 경비업법 제10조의2 본문, 동법 제10조 제2항 제2호·동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2호</p>
문제편 236~236p 번호 : 14	문제-본문	<p>14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p> <p>① 피성년후견인은 청원경찰로 임용될 수 없다.</p> <p>② <u>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사람은 청원경찰로 임용될 수 없다.</u></p> <p>③ 청원경찰로 임용되기 위한 신체조건은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하며,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p> <p>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청원경찰로 임용될 수 없다.</p>	<p>14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p> <p>① 피성년후견인은 청원경찰로 임용될 수 없다.</p> <p>② <u>18세 미만이거나 50세 이상인 사람은 청원경찰로 임용될 수 없다.</u></p> <p>③ 청원경찰로 임용되기 위한 신체조건은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하며,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p> <p>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청원경찰로 임용될 수 없다.</p>

위치	오류유형	수정 전	수정 후
정답 및 해설편 265~265p 번호 : 36	해설	<p>36 정답 ③</p> <p>③ (○) 경비업법 제29조 제2항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되는 형법상 범죄에는 특수상해죄, 상해치사죄, 폭행죄, 폭행치사상죄,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 체포·감금죄, 중체포·중감금죄, 체포·감금치사상죄, 협박죄, 특수강요죄, 특수공갈죄, 재물손괴죄가 있다.</p> <p>① (×), ④ (×) 특수강도죄(형법 제334조), 살인죄(형법 제250조)는 경비업법 제29조 제1항의 가중처벌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p> <p>② (×) 경비업법 제29조 제1항은 과실범과 관련하여 가중처벌 대상범죄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중과실치사상죄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단순과실치사상죄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p> <p style="text-align: center;">형의 가중처벌(경비업법 제29조)</p> <p>① 특수경비원이 무기를 휴대하고 경비업무를 수행 중에 제14조 제8항의 규정 및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무기의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죄) 제1항(제257조 제1항 상해죄로 한정, 존속상해죄는 제외)·제2항(제258조 제1항·제2항 중상해죄로 한정, 존속중상해죄는 제외), 제259조 제1항(상해치사죄), 제260조 제1항(폭행죄), 제262조(폭행치사상죄),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죄, 중과실치사상죄), 제276조 제1항(체포 또는 감금죄), 제277조 제1항(중체포 또는 중감금죄), 제281조 제1항(체포·감금치사상죄), 제283조 제1항(협박죄), 제324조 제2항(특수강요죄), 제350조의2(특수공갈죄) 및 제366조(재물손괴등죄)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p>	<p>36 정답 ③</p> <p>③ (○) 경비업법 제29조 제2항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되는 형법상 범죄에는 특수상해죄, 상해치사죄, 특수폭행죄, 폭행치사상죄,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 체포·감금죄, 중체포·중감금죄, 체포·감금치사상죄, 협박죄, 특수강요죄, 특수공갈죄, 재물손괴죄가 있다.</p> <p>① (×), ④ (×) 특수강도죄(형법 제334조), 살인죄(형법 제250조)는 경비업법 제29조 제2항의 가중처벌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p> <p>② (×) 경비업법 제29조 제2항은 과실범과 관련하여 가중처벌 대상범죄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중과실치사상죄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단순과실치사상죄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p> <p style="text-align: center;">형의 가중처벌(경비업법 제29조)</p> <p>② 경비원이 경비업무 수행 중에 제16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장비 외에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죄) 제1항(제257조 제1항의 상해죄로 한정, 존속상해죄는 제외)·제2항(제258조 제1항·제2항의 중상해죄로 한정, 존속중상해죄는 제외), 제259조 제1항(상해치사죄), 제261조(특수폭행죄), 제262조(폭행치사상죄),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 제276조 제1항(체포 또는 감금죄), 제277조 제1항(중체포 또는 중감금죄), 제281조 제1항(체포·감금등의 치사상죄), 제283조 제1항(협박죄), 제324조 제2항(특수강요죄), 제350조의2(특수공갈죄) 및 제366조(재물손괴등죄)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p>
정답 및 해설편 322~322p 번호 : 03	해설	<p>03 정답 ④</p> <p>④ (×) 관할 경찰관서장의 배치폐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여(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제8호 위반) 허가가 취소된 법인의 허가취소 당시의 임원이었던 자로서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허가취소된 경비업무와 동종의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경비업법 제5조 제5호).</p> <p>① (○), ② (○) 경비업법 제5조 제4호</p> <p>③ (○)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위반) 허가가 취소된 호송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허가취소 당시의 임원이었던 자로서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기계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경비업법 제5조 제5호).</p>	<p>03 정답 ④</p> <p>④ (×) 관할 경찰관서장의 배치폐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여(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제8호 위반) 허가가 취소된 법인의 허가취소 당시의 임원이었던 자로서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허가취소된 경비업무와 동종의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경비업법 제5조 제5호).</p> <p>① (○), ② (○) 경비업법 제5조 제4호</p> <p>③ (○)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위반) 허가가 취소된 호송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허가취소 당시의 임원이었던 자로서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호송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경비업법 제5조 제5호).</p>

위치	오류유형	수정 전	수정 후
정답 및 해설편 327~327p 번호 : 14	문제-문항	<p>14 정답 ②</p> <p><u>② (×) 2014.3.18. 청원경찰법 시행령 개정으로 청원경찰의 임용자격에 연령 상한규정이 삭제되어 50세 이상의 사람도 현재는 청원경찰로 임용될 수 있다(청원경찰법 시행령 제3조).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사람은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는 자에 대한 규정이다(경비업법 제10조 제2항 제1호).</u></p> <p>① (○) 청원경찰법 제5조 제2항,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호</p> <p>③ (○)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동법 시행규칙 제4조</p> <p>④ (○) 청원경찰법 제5조 제2항,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4호</p>	<p>14 정답 ②</p> <p><u>② (×) 2014.3.18. 청원경찰법 시행령 개정으로 청원경찰의 임용자격에 연령 상한규정이 삭제되어 50세 이상의 사람도 현재는 청원경찰로 임용될 수 있다(청원경찰법 시행령 제3조).</u></p> <p>① (○) 청원경찰법 제5조 제2항,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호</p> <p>③ (○)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동법 시행규칙 제4조</p> <p>④ (○) 청원경찰법 제5조 제2항,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4호</p>

도서의 오류로 학습에 불편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더 나은 도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시대교육그룹이 되겠습니다.